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28
----------	-----

提案年月日：1994年 5月 27日

提案者：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

1. 提案理由

- 市政의 主要施策 및 法令 其他 法規에 의한 委員會 決定事項이 現實과 맞지 않게 細部的으로 나열됨에 따라서 運營에 非能率을 招來하고 있는바, 이를 自體實情에 맞게 合理的으로 改善하고자 하는 것이며,
- 促迫한 議案 提出時限을 延長하여 案件審議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非現實的인 分科委員會 構成을 削除코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委員長 事故時에 副委員長, 委員長과 副委員長 모두 事故時는 主務室·局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던 것을 委員長 事故時만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토록 하고 每 會議時마다 各 分野別로 委囑委員 構成을 義務化하는 한편, (案 第2條)
- 나. 細部的으로 나열(1號~33號)된 議決事項을 包括적으로 規定하여 融適性 있게 改善하였으며 (案 第3條)
- 다. 議案提出 時限을 24時間에서 48時間으로 延長하여 案件審議에 慎重을 기하도록 하였음. (案 第4條)
- 라. 必要時에 5人 以內로 構成할 수 있도록 한 分科委員會는 그동안 非現實的인 運營實態를 勘案하여 이를 削除하였음. (案 第7條)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전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위촉위원은 매 회의시마다 각 분야별로 2인내외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당해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각종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등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5.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24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3항의”를 “제2항의”로 하고,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5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를 “위촉위원에”로 하고 동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구성) ①(생략)</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u>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다만, 제3조 제11호 및 제17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u>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③(생략)</p> <p>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⑤(생략)</p>	<p>제2조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u>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③(현행과 같음)</p> <p>④위촉위원은 <u>매회의시마다 각 분야별로 2인 내외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당해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⑤(현행과 같음)</p>
<p>제3조 (결정사항) <u>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u> 2. <u>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u> 	<p>제3조 (결정사항) <u>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u> 2. <u>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사항</p> <p>4. <u>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u></p> <p>5. <u>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u></p> <p>6. <u>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p> <p>7. <u>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u></p> <p>8. <u>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u></p> <p>9. <u>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에 관한사항</u></p> <p>10. <u>공무원 재안의심사, 채택, 시상등에 관한 사항</u></p> <p>11. <u>관리방조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u></p> <p>12. <u>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3. <u>농촌공장 유지에 관한 사항</u></p> <p>14. <u>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의 처리사항</u></p> <p>15. <u>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6. <u>외국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p> <p>4. <u>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 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등(이하"심의회" 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u></p> <p>5. <u>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1호 내지 33호 (삭제)</u></p>

현행	개정안
<p>17. <u>조소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8. <u>기획업무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예산심의에 관한 사항</u></p> <p>19. <u>방역대책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u></p> <p>20. <u>농가대여 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u></p> <p>21. <u>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22. <u>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례준칙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23. <u>삭제(1990.10.16 조례 제2050호)</u></p> <p>24. <u>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25. <u>수출진흥에 관한 사항</u></p> <p>26. <u>물가소비절약에 관한 사항</u></p> <p>27. <u>시지편찬에 관한 사항</u></p> <p>28. <u>운락여성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u></p> <p>29. <u>대형화재예방대책에 관한 사항</u></p> <p>30. <u>공동묘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31. <u>법령에 의거 시에 설치하여야 할</u></p>	

현행	개정안
<p><u>위원회중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32. <u>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u></p> <p>33. <u>기타 시장의 결실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u></p> <p>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u>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u> <u>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위원회는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u></p> <p>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u>회의개최 24시간전까지 간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u>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u></p> <p>⑤위원회는 <u>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위원장은 <u>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u></p>	<p>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u>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u> <u>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p> <p>② (삭제)</p> <p>②- - - - -</p> <p><u>48시간</u> - - - - -</p> <p>③ <u>제2항의</u> - - - - -</p> <p>- - - - -</p> <p>④- - - - -</p> <p>- - - - -</p> <p>- - - - - <u>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u></p>

현행	개정안
<p>⑥재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의 효력을 갖는다</p> <p>⑦ (생략)</p>	<p>⑤재4항에 -----</p> <p>-----</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p> <p>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 (삭제)</p>
<p>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직할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p> <p>-----</p> <p>-----</p> <p>-----</p>
<p>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 (시행규칙) -----</p> <p>-----</p>